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5441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과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6704호)	정동영의원	2024.12.19.	가.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5.3.5.) 상정/제안설명/검토보고/대체토론/소위원회부 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5.11.19.) 상정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9743호)	이훈기의원	2025.3.31.	가. 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8.26.) 상정/제안설명/검토보고/대체토론/소위원회부 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5.11.19.) 상정

가. 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

12. 10.)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나. 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 12. 1

0.)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,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(안 제18조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공공성 및 공정성을”을 “공공성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